


고령군 공고 제2026-741호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(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)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04. 28.
고령군수 

□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현황

연번	상 호	대표자	영업소위치	폐업일자	비고
1	성산OK마트	김**	경북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1009	2026.04.28.	

□ 소매인지정 신청

- 신청 접수기간 : 2026.04.28. ~ 2026.05.05. 18:00.
- 신청 대상자 : 폐업 업소 인근상가로 소매인지정기준에 적합한자
(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)

가. 일반소매

- 기존 담배소매점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

나. 구내소매

-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,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 백화점·쇼핑센터 등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
-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·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

- 접수처 : 고령군청 지역경제실

- 구비서류

- 신청서
-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오는 경우 미 첨부 가능)
- 우선지정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류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

□ 접수기간 내 신청자에 대한 처리

-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.(추첨방법은 추후 통보)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또는 가족(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은 우선하여 지정가능
- 기타 문의사항 : 고령군 지역경제실 (☎ 054-950-6564)

